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4차 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8. 10. 12.(금) 10:00~12:00 / 정부서울청사 12층 CS룸

○ (참 석) : 전략위원 20명*

* 20명 : 조성준 민간위원장 등 민간위원 총 12명

행안부 장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 당연직 위원 총 8명

○ (주요내용)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활용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향,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 추진현황, 공공데이터법 시행 5주년 관련 행사계획 등 보고

□ 회의 주요 의견

○ (조성준 위원장) 정부는 지난 8월 31일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전수 파악 및 국가데이터맵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기반이 될 것입니다.

범정부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맵을 그리는 작업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올바른 방향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효용성이 큰 결과물로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초에 공동데이터정책 시행 5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안부 장관) 지난 8월에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성장간담회에서 데이터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간 결합은 몇 가지의 룰을 정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데이터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을 공공데이터전략 위원회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 4차 산업특위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에만 집착한 나머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제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방안과 함께 데이터표준화와 품질 개선방안,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민화 위원)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서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네거티브 개방원칙이 오늘 자료의 개방 심의 과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방 안 할 부분을 심의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공데이터가 5% 개방되어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95%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우리도 3년 내에 50%는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개방원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50% 개방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법은, 국가안보문제가 없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고 논리적 망분리로 보안을 하는 2등급 분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은 무조건 다 클라우드에 올려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혹시라도 정보활용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개인정보 활용 분야의 위원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위원이 절반씩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계 위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과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익명화 과정을 개별기업이나 조직에 맡기면 익명화를 잘못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서 가능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처럼 익명가공정보처리업체를 법에 꼭 반영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익명가공화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플랫폼과 관련하여 기관별 메타데이터DB에서 전체 중앙 메타데이터DB를 만들 때, 중앙으로 집중되는 경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나 지자체 등 서로 다른 개별기관들이 상호소통을 통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길이 꼭 열려야 합니다. 또한 중앙 메타데이터DB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효율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 (조성준 위원장) 결합을 위해 전문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관을 인증해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입니까? 익명화와 결합을 전문기관에 같이 맡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현재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각 부처별로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성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하되, 대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민화 위원) 익명화 서비스는 일본의 경우 SPC 형태의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맡기게 되면 또 다른 비효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익명가공정보업체는 일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혜정 위원)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메타데이터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 메타를 조사해서 구축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플랫폼이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정부의 예산 심의과정에 어떤 데이터를 구매, 생산했는지를 넣어서 정부 업무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메타화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부터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량 위원) 범정부EA포털에서도 기준데이터나 마스터데이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범정부 플랫폼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플랫폼도 필요하겠지만 범정부 EA포털도 활용, 활성화나 성과관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중복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17,000여개의 시스템 중 행정지원용, 시스템운영용 시스템을 제외한 8천여 개의 시스템이 조사 대상이었다면 행정이나 내무업무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부분이나 데이터는 없는 것인지, 또한 모수가 전체 시스

템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방 데이터의 모수를 산정할 때, 국가안보 등 공개 불가능한 데이터는 모수 자체에서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거티브방식의 심의를 위해서도 모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공공데이터 개방이 연속 2회 세계 1위를 하는 등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외부평가와 실제 우리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과의 갭이 있다면, 이것을 매칭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방 활용 시,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 개정 시에 애매모호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료 5페이지의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라는 말 중 ‘합리적 연관성’ 에 대한 판단근거 등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해야 데이터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소유자 등이 불안함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윤혜정 위원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 시스템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메타데이터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량 위원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OECD 평가에서는 개방지수 1위를 하고 있지만, 최근 오픈데이터 바로미터(Open Data Barometer)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각 15개 분야의 각 항목별로 어떤 부분들이 잘 개방되고 있는지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예산, 조달, 선거, 지도 분야 등은 잘 개방이 되고 있는데, 수출, 기업분야는 100점 만점에 5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령 같은 경우에는 법령정보가 아니라 판례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50점, 그 다음에 보건 쪽도 점수가 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한선화 위원) 첫 번째, 자료집 5페이지에 있는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와 관련하여 기업내부 데이터에서 기업이라는 표현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업인지 개념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결합을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결합에 대한 제한요건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간 데이터는 자유롭게 결합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획득할 시의 제재조치만 마련하고 결합을 허용하면 될 텐데, 왜 전문기관이라는 중간단계가 들어가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하려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막는 주체가 국정원입니다. 저희 정부출연연구소 같은 경우 구글독스나 구글클라우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국정원도 협력자로 포함하여 설득해야 더 가치 있는 데이터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기업 간 데이터 결합에 전문기관이라는 중개기관을 만든 배경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할 때, 시민단체와 산업계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합의가 되

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절충안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계별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회적인 여건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간기구,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국정원, 데이터개방 기관까지 확대 할 예정입니다.

- (조성준 위원장) 절충안에 대해 양측이 다 동의를 하였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시민단체 쪽에서 그동안 이런 절충안 조차도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추진체계의 효율화입니다.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관련 각종 기능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고,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감시를 충실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의점에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량 교수님이 말씀하신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는 지난 5월에 시행된 유럽의 GDPR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EU GDPR의 오피니언의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목적적인 범위, 개인정보의 민감한 정보, 정보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세부기준들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입니다.

- (이민화 위원)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규제해야할 것은 재식별화입니다. 데이터의 결합을 규제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 잡혀있는 것입니다.
- (이경일 위원)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유사법령들입니다. 행안부나 방통위, 금융위 외의 개별 기관에서 만들거나 관리되는 개인정보 관련 법은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의 비즈니스는 대부분 융합비즈니스

스이기 때문에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보건복지 관련 법과 통신법, 보건복지 관련법과 개인정보법 등과 같은 형태로 연관되어 있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거나 이관하는 것 외에도 연속되게 관련된 다른 법률들을 어떻게 개정 또는 개편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산업의 불씨가 실제로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동안 개방이 어려웠던 기재부나 국세청 등의 데이터나 대법원 판례데이터 등을 개방 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개방되면, 조세피난처 데이터가 개방되었을 때 민간에서 조세회피자나 탈세자의 목록을 뽑아 정부와 협력했던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처럼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 (김도현 위원) 이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같이 참여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되어 의료법과의 충돌문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가 같이 조정이 되는 체계가 이루어지면 산업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데이터의 네거티브방식 개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민간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보니 올해 11월, 12월에 각각 기관들이 판단해서 산업적인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방데이터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부처가 산업적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 민관이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민간의견들을 축적해서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장덕진 위원)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처리자의 책임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식별화할 가능성, 혹은 정부가 이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절대 재식별화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데이터가 얼마나 개방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어느 분야에 얼마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데이터 개방율을 5%에서 50%로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개방을 원치 않는 실무 담당자들이 임의적으로 데이터의 필드나 단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생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공성 있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정식으로 분류하고, 그 중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등의 데이터 생산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방하기 싫은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김흥기 위원)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 너무 공급자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품질을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지금은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질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사용이 되기 힘듭니다.

특히 연구목적의 데이터는 한국에서 쓸 만한 것은 거의 없어서 외국의 공개 되어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외국의 경우 오픈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사용자관점에서 데이터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것이 구성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플랫폼 관점에서 지금은 표준화, 경직된 메타 데이터를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Vocabulary echo system이나 메타데이터 에코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메타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위한 데이터품질관리위원회를 각 분야별 소비자, 예를 들면 연구자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만들고 관리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미 위원-실무위원장) 지난 실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안전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법 개정애 반영되는 내용이나 낮은 활용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품질이 활용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 아닌가하는 논의들이 구체화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개방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부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애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도 공공데이터의 완전한 활용과 개방을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요소, 책임성 등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법을 통한 활용수준의 제고와 인식의 개

선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불신을 전제로 하는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에 대한 기반이 좀 더 확실했다면 상당부분 활용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연하게 활용도를 생성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진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때 다양한 영역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홍보나 인식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 시에 개정의 취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대국민 메시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설득논리를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거버넌스의 강화, 개인정보보호 위배시의 책임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에 의한 관리 등을 잘 정리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관련된 특별법 중, 보호와 산업진흥 역할이 있는 법의 경우는 그 균형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부터 데이터플랫폼 구축까지의 전 과정은 책자형태로 홍보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속도에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표준메타데이터 구축 시에 메타데이터의 구체화, 방향성, 글로벌 표준 및 확장성과 미래의 유연성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여 잘 설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차적 목표로 기본을 튼튼하게 하면 2단계 작업은 양적인 작업이기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따라서 1단계 표준메타데이터 구축 작업은 튼튼하게 하는 핵심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성준 위원장) 플랫폼은 시각화까지 하고, 메타데이터를 결합해서 개념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묶는다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하기가 불가능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과 시간과 자원이 충분한지 검토한 후, 목표를 조정해서 현실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관에서 판단한 데이터의 비개방 사유나 개인정보 관련성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개방 여부를 권고 혹은 결정하는 것이 전략위원회의 역할인 것 같은데, 784개 기관의 45만개의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략위나 실무위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낼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 (이민화 위원) 지금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방하면 됩니다. 그보다 데이터의 품질의 불신에 대해 한시적 면책을 주고, 그 다음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고려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데이터 개방을 할 때 느끼는 불안감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법적으로 위반될 것 같아서 안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기관에서 데이터를 굉장한

자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천데이터를 잘 안 주고 지표화나 집산화 처리해서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때의 문제점과, 활용 가능한 품질의 데이터를 위한 가공처리 비용 문제, 또한 이것을 어느 주체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려면,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 시의 책임 문제, 정보를 정확하게 가공해서 공유할 책임과 비용 부담 등이 원처리자나 활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 (윤혜정 위원) 데이터의 표준화도 권고만 하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계속 간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계속 자산화하고, 좋은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예산 집행 시, 데이터를 생성하여 제대로 만드는 것을 검토 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추후 데이터를 보정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내 기관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집행과 데이터의 생성 프로세스가 연관되어야만 데이터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민화 위원)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해서 개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유예해 주고, 개방 이후의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완벽하게 만들고 개방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활성위원회나 개인정보활용위원회라고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개방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양순 위원) 산업체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다면 산업체가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장치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긴장감을 늦춰주면서 데이터를 누구나 잘 공유해서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국가발전에도 좋고 전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윤소라 위원) 실제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포커스를 맞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성준 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보고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